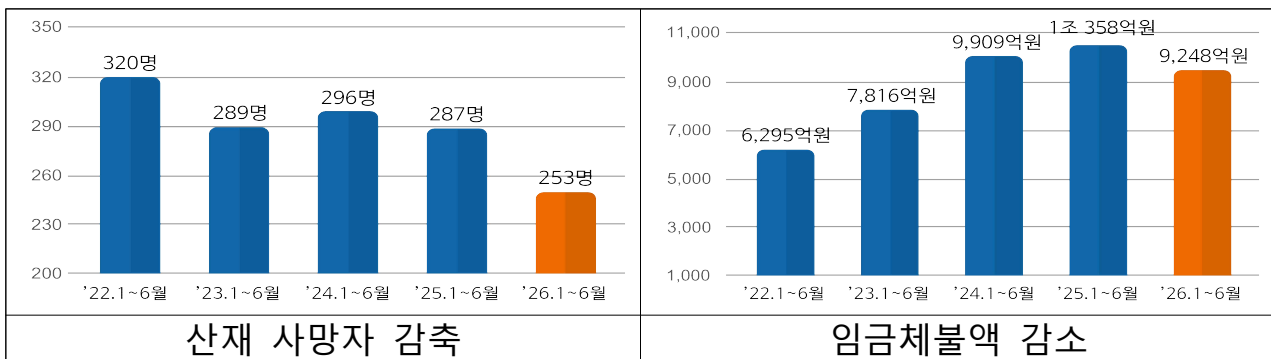

고용노동부 업무보고

2026. 08. 04.

I. 상반기 주요 성과

1 생명·안전 존중과 공정한 보상 기틀 마련(국정 75-3, 93-4)

- **(산업안전)** 정부의 산재근절 메시지가 현장 및 노사로 확산, 건설·기타 업종 소규모 사업장 점검·감독 및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산재예방 협업 강화
 - '26.1~6월 사고사망자 253명, 전년동기(287명) 대비 34명 감소(11.8%), 상반기 기준 통계 작성 후 최저 수치로, 1분기에 이어 감소 추세 지속
- **(임금체불)** 임금체불 종합 근절대책('25.9.2.)을 토대로 임금체불 전수조사('25.12월~),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(3년→5년 이하) 등 구조적 원인해소 노력
 - '26.6월 체불액은 9,248억원, 전년 동월(10,358억원) 대비 10.7% 감소, 체불인원 109,830명으로 전년 동월(130,467명) 대비 15.8% 감소
 -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 개선을 위해 법 개정 前 지도지침 마련·시행('26.4월)



< 주요 우수사례 >

- ▶ **(산업안전)** ▲ 「떨어지면 죽습니다」 등 핵심 안전메시지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, '26.상반기 '떨어짐' 사망사고 35% 감축, ▲ 유가족과 함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신속·총력 대응(울산화력발전소 등, 중수본 운영: 장관)

2 원·하청 상생 및 취약노동자 보호(국정 93-2, 93-3, 94-4)

- **(원·하청 상생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)** 개정 노조법*을 통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'대화를 제도화'하여 상생의 기틀 마련
 - * ▲ (民) '수 만명 시민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'
 - ▲ (韓) '중요한 제도적 진전,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·노동시장 불평등 완화 역할 필요'
 - 노조법 시행령 개정 및 교섭절차 매뉴얼,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 안정적 교섭틀을 기반으로 원·하청 간 실질적 대화 본격화
 - 63년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 및 법정 공휴일 지정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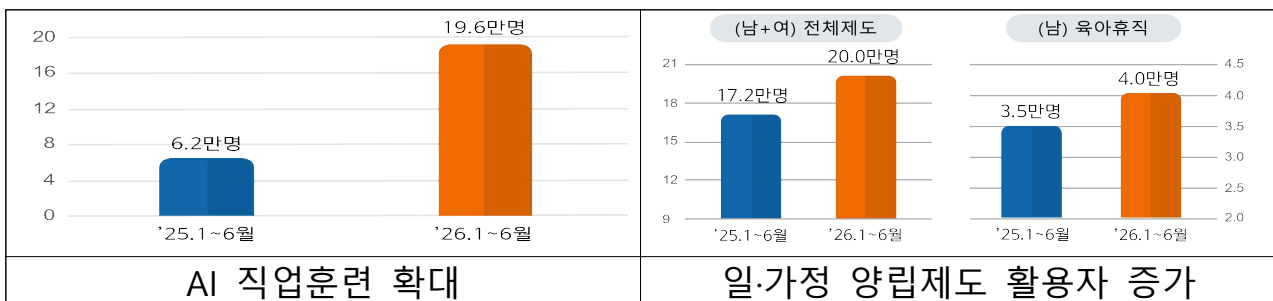
- **(공공부문)**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처우 및 도급운영 개선방안 마련
 - ①공정수당(기준금액의 8.5~10% → 7.3만명) 및 적정임금(최저임금의 118% → 14.6만명) 도입('27년), ②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, 초단시간 남용방지, ③공무직촉 법 제정
 - ①적정 낙찰률 보장, ②고용승계 명확화, ③하도급 제한
- **(사회적대화 복원)** 정부출범 이후 제1기 경사노위 출범*(3.19~, 17개 위원회 순차적 발족) → 청년일자리, AI 전환, 산업안전 등 주요 현안별 대화 본격화
 - * ▲노사정 공동선언 ▲위원회: 산업안전보건(5.7), 청년일자리(5.20), AI전환 노사상생(5.22) 등
 - 조선업 협의체 신설(7.13), 노정·경정 협의체(27회) 등 중층적 대화체계 운영

< 주요 우수사례 >

▶**(노동존중문화 확산)** 다시 돌아온 모두의 노동절 → 노동계, 시민사회, 경영계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노동존중문화 향유 계기 마련

3 AX 산업전환 · 중동 위기에 적극 대응(국정 92-3, 95-3, 96-3)

- **(청년 AI 역량향상)** 청년이 AI 기술을 익혀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AI 특화훈련 신설(KDT AI 캠퍼스, 1만명), 대기업 주도 K-뉴딜 아카데미* 신설
 - * 53개사, 72개 아카데미, 8.2천명 / ** '26.상반기 AI 훈련 19.6만명(3배↑), 5년간 100만명 이상 지원
- **(위기 대응)**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매트 개편·위기대응 체계 확충
 - 소득기반 고용보험 근거 마련(시간→소득, '26.3월 법 개정) 통해 사각지대 완화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('25.7월~), 중동전쟁 피해우려분야 신속 지원*
 - * 피해우려지역 고용안정 지원(추경, 120억원),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
- **(일·육아지원 확대)**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여건조성을 통해 '26.1~6월 일·가정양립 활용자 수(20.0만명) 전년동기 대비 +16.2%
 - * 육아기 10시출근제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등 중소 사업주 지원 강화
 - 특히, '26.1~6월 남성 육아휴직자(4.0만명) 전년동기 대비 +16.4% → '25년 큰 폭 증가(6.7만명, +60.7%)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증가추세



< 주요 우수사례 >

▶**(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)** 사후지원 방식의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문제를 개선, 지방관서와 협업하여 선제적 조치 시행(7개 지역 4.6만명 지원 중)

II. 핵심 추진과제

비전: “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”

중점 추진과제: “대체불가 대한민국” 달성을 위한
“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” 추진

① 생명·안전 존중과 정당한 보상은 타협없이 확고하게 추진

- (안전 일터 조성) 동일유형 반복재해 발생 기업 대상 핀셋 집중관리*
* 최근 10년간 동일재해 반복 기업 183개(건설업 추락사고, 제조업 끼임사고 등)
- (임금체불 근절) 임금체불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변화를 위한 사업장 전수조사, 인식개선 등 지속 추진

② 청년은 내일을 찾고,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간 상생 일자리 확대 주력

- (청년) 일자리기회조차 부족한 청년에게 민간·공공이 함께 원하는 일자리 기회를 갖도록 지원 강화
* `26.6월 청년 취업자 19.7만명 감소, 청년 고용률(43.9%) 26개월 연속 하락
- (중장년)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·일경험·취업알선 등 통합 지원으로 신속한 이·전직 지원
*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52.9세, 퇴직 후 재취업 소요기간(45세 이상) 15.6개월
- (고용서비스 혁신)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AI와 결합한 취업 전진 기지로 대전환 → 졸업부터 퇴직까지 평생 토탈케어

③ AX 산업전환 대응, 격차 완화 및 새로운 사회계약 체결

- (사각지대 및 격차 완화)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및 맞춤형 공제·복지 지원, 노동법 보호범위 확대 및 현장 감독으로 격차 완화
* ▲ 플랫폼·프리랜서 등 신규 고용형태 급증(기존 노동법 미적용)
▲ `24년 [임금] 대기업·정규 100 > 대기업·비정규 62 > 중소·정규 58 > 중소·비정규 42
- (모두를 위한 AI) 누구나 참여 가능한 AI 직업훈련 확대
* 5년간 AI 보편화로 일자리 1.7억개 창출, 9,200만개 소멸 전망(WEF)
- (새로운 사회계약) AI 혁신 투자 및 원·하청 상생 등 주요 의제 공론화, 노·사·전문가 등 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 → 후속논의 신속 추진

1 역점 과제

① 모두가 안전하게,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터 구축(국정 75-2, 75-5, 93-4)

□ (추진배경) 현재의 산업재해·임금체불 감소추세가 제도화되도록,

- 동일유형 반복재해 사업장(최근 10년 183개사), 소규모사업장 임금체불 등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타겟팅, 집중관리

□ 주요내용

- (안전한 일터) 동일유형 반복재해 발생한 모든 기업별 안전대책 마련 및 업종별 고강도 감독·점검 등 밀착 관리 집중(7월~)

- * ▲(공통) 동일, 반복 재해 기업이 중대재해 재발 시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등
- ▲(제조) 최근 3년간 재해 반복 기업 감독·점검, 감독관 전담관리제 통해 관리
- ▲(건설) 떨어짐 등 안전 수칙 중점 점검, 미흡 현장은 감독 연계
- ▲(지방정부) 맨홀 작업 특단 대책 강화, ▲(운수/임업) 패트롤, 안전수칙 전파

- ‘폭염안전 특별대책반’ 가동하여 5대 기본수칙 이행점검 및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도 강화, 맨홀작업 전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질식재해 예방(5~9월)

- * 24시간 지방정부-감독관 오픈채팅방 등 통해 맨홀작업 상황 통지 및 사전확인

- 노동자 피할권리(작업중지권) 확대, 참여권리(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특) 보장(~12월)

- * 노동계·건설협회 등과 TF 운영을 통해 작업중지 우수사례집 및 실무 매뉴얼 제작·배포

- (체불없는 일터) 제도개선 ‘27.1월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* 차질없는 준비, 대법원 등과 구형·양형기준 상향 조정** 협의(7월)하여 제재효과 제고

- *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 구분 지급·확인, 공공 건설 → 공공+민간의 건설·조선업으로 확대

- ** 체불규모, 피해 노동자 수, 상습성이 클수록 처벌 수위 상향

- 감독 체불반복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지속 확대(‘25.12월~), 체불가능성 높은 사업장(포괄임금 오남용 등)을 발굴하여 예방감독 강화(‘26.上)

- (지방정부 협업) 경기도부터 시작(7월 MOU 체결)하여 17개 지방정부로 감독 확산(법령·인력 등 여건 마련),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(‘27.上)

□ 이행계획

구분	‘26년		‘27년	
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안전한 일터	· 동일, 반복 재해 기업별 안전대책 마련 및 밀착 관리 실시(7월) · 폭염,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(5~9월) · 작업중지 우수사례집, 매뉴얼 보급(11월) ·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(~12월)			
체불 근절	· 양형기준 조정 협의(7.9) ·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감독 등(7월~) · 법정형 상향 시행(10.8) · 체불 가능성 높은 사업장 예방감독(계속) · 재직자 익명신고센터 제보 감독(계속) · 임금구분지급제 시행(1월)			
지방정부 협업 등	· 수사교육과정 개발·운영(7월~)	· 노동감독관법 시행(12월)	· 전담교육기관 신설 추진(계속)	· 재직자교육 단계적 개편 추진(계속)

② 청년은 내일 찾고,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간 상생 일자리 확대 (국정 92-1, 96-1·4)

- (추진배경) 청년뉴딜 대책(4.29) 추진 등 노력에도 청년 등 고용한파 지속, 청년은 첫 일자리, 중장년은 다시 일할자리 부족으로 정책체감도가 낮은 상황

* (청년) '26.6월 청년 취업자 19.7만명 감소, 고용률 1.7%p 하락(43.9%, 26개월 연속)
(중장년)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52.9세, 퇴직 후 재취업 소요기간(45세 이상) 15.6개월

-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고용서비스 혁신, 제도개선까지 역량 집중

□ 주요내용

<1> 청년: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

- ① (청년 역량기회 보장) 공공(전부처 2만명), 민간 일경험(4.5만명) 및 대기업 주도 'K-뉴딜 아카데미'(AI·반도체·엔터 등 72개 선정, 8.2천명) 확대('27년~)

- K-유스개런티(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특화지원)를 신설하고, 구직촉진 수당 단계적 인상 등 청년 지원 확대

- ② (원하는 일자리 확대) 공공가치 창출 등과 연계한 청년 공공일자리를 확대, 추진·점검체계* 운영(관계부처 합동)

* 운영가이드 마련, 참여자 모니터링, 평가 등 실시

** 일자리 성격·전문성에 따라 ①정부업무(대지급금 변제금 회수강화 지원단), ②AI(중소기업 청년 AI코치), ③사회서비스, ④민간연계, ⑤자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발굴

- 지역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성장하도록 취업, 근속시 지원수준 확대*

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범위·규모 확대 추진

- ③ (국가책임 취업지원) 구직·취업 초기 청년이 원하는 '온라인 멘토링' 신설, 청년지원기관 연계 강화 및 온라인 지원창구(미취업 청년 DB 활용) 구축

- '가칭플레이그라운드*' 신설, K-뉴딜 아카데미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원(스마트공장 등 정부 지원 등)과 연계한 일자리에 채용·창업 책임 지원 추진

* 전문 상담사 취업지원, 또래집단 커뮤니티 활동, 자기주도 구직활동 등

-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(경력인정서 발급)도 확대

<2> 중장년: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는 기반 마련

- (경력설계) 중장년내일센터를 1:1 맞춤형 '경력개발센터'로 확대·개편('26년 2개)

○ (재취업지원서비스) 의무사업장 확대·노동자 선택폭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* 실행(시행령 개정(~9월) 등)을 통한 체감도 제고

- * ▲(의무사업장 확대) (現) 1,000인 이상 → ('27년) 500인 이상 → ('29년) 300인 이상
- ▲(노동자 선택) 온라인 주말 과정, 폴리텍 특화훈련, 일경험 산업전환 특화훈련 등 선택폭 확대

- 적합 일자리 발굴, 훈련, 일경험, 취업알선 등 중장년 경력전환·이음을 통합 지원(중장년고용네트워크 '25년 15개소 → '26년 37개소)

○ (정년연장) 사회적 논의(정년연장 특위 전문가(3월)·노사간담회(4월) 등)를 기반으로 세대 상생형 정년 법제화(하반기 입법) 추진

- 세대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원방안* 마련 병행

- * 고용유지에 따른 직무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부담 완화, 특고·플랫폼 노후소득 지원 방안 마련

- 정원 및 총인건비 관리 개선 협의 및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공공기관 신규청년채용 촉진*

- * 세대상생(정년연장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), 일가정양립제도 연계 등

<3> 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, 졸업에서 퇴직까지 전국민 '평생 토탈케어'

○ 「나만의 AI 고용센터」 구축(5월 국민취업지원제도, 9월 실업급여 시범사업) →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국민에게 '차별화된 맞춤 토탈서비스' 제공

- 구직자 특성에 따라 특화된 취업지원*,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는 1:1 책임관리

- * AI 프로파일링 통해 ▲스스로 구직활동 가능한 '자기주도형'(AI 전담지원)

- ▲전문상담원 지원이 필요한 '집중지원형'(AI + Case Manager 1:1 전담관리)으로 구분

- 청년·직업탐색·훈련·선호 일자리 취업까지 원스톱 고용서비스(잡케어), 중장년·보유경력을 분석하여 자격증추천·직업경로 등 은퇴까지 경력설계

- 기업·구인애로기업을 발굴하여 적합인재 알선(뽕케어)부터 적응까지 밀착 지원

- 실업급여 등 지급은 자동화로 신속 처리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

□ 이행계획

구분	'26년		'27년	
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청년	· K-뉴딜 아카데미 등 주요 과제 신속 이행(계속)			
중장년	·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「고령자고용법 시행령」 개정(9월)	· 노동자 선택,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마련 (~12월)	· 의무사업장 확대 적용 기업(500~999인) 지원(1월~)	· 재취업지원을 40+조기경력설계로 전환 방안 마련(1월~)
	· 사회적 논의 결과에 맞춰 정년연장 입법 추진(+상생방안 마련)		· 현장 안착 지원(계속)	
고용 서비스	· AI직업상담지식 등 3개 서비스 개시(8월)	· AI 경력설계 등 5개 서비스 개시(12월)		
	· 나만의 AI 고용센터 시범사업 착수 (국민취업지원제도 5월, 실업급여 9월)		· 나만의 AI 고용센터 시범사업 확대(3월)	

③ AX 등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 완화(국정 92-3·4, 93-1·3·4·5, 95-1)

- (추진배경)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등 원·하청 격차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, K자 성장으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 우려
 -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원·하청 등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착근을 위한 정부지원 병행

< 1 > 격차 완화

□ 주요내용

- (사회안전매트 강화) 특고·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약 869만명을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매트 강화
 - ^{가칭}K-노동복지회의소* 신설(방안마련, 12월),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(12월) 등 보호기반 마련 → 일터부터 노후까지 빈틈없이 지원
 - *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매트(권익보호·복지지원 등)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전달체계
 - ** 제114회 ILO 총회에서 '플랫폼 경제 양질의 일자리 협약' 채택(제193호, '26.6월)

- ① 일터 든든: 미수금 회수 지원, 일터개선 프로젝트, 성희롱·괴롭힘 구제 등
 - ② 복지 든든: 「근로복지기본법」을 ^{가칭}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개정, 노무제공자 휴가 활성화
 - ③ 성장 든든: 내일배움카드 활성화, 경력관리 지원, 플랫폼프리랜서 특화훈련 운영지원 등
 - ④ 노후 든든: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

-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·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적용 확대 → 산재·건강보험료 지원,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추진('27.上~)
 - * (사회보험) 두루누리 지원범위 확대(고용 → 산재·건강보험료 추가지원)
- 특고·프리랜서 등 일·육아지원을 위해 육아수당 신설('27.6월~)
- (격차 완화 선순환 구조 마련) 「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」 논의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 선언('25.12월) → 합의과제 성실히 추진
 - * ▲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·지원법 제정, ▲포괄임금 오남용 방지, ▲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등
-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* 마련(12월, 법, 임금정보제공, 초기업교섭 등)
 - * ▲근로기준법에 원칙 신설, ▲산업, 규모,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 확대 제공(표본 3.3만→6.6만), ▲공공부문 선도로 초기업 교섭모델 개발, 민간 자율 확산
- 쉼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,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 개선(12월, 법 개정) 및 선제도입, 플랫폼·1년미만 등 사업장 지원 선행
- 5인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적용방식·지원방안 등 사회적 대화 집중 논의(실태분석 5~10월, 사회적 대화 9월~)
- 공공부문 비정규직·도급 개선 지도점검, 예산 및 경영평가 반영 등 통해 이행력 제고,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체계·인사관리·노정협의 등 논의(9월)

- (이주 노동자와 동행) 외국인 권익침해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권리구제 강화(6월~), 외국인 고용 전 과정에서 통합·체계적 지원체계 구축('26.下)
 - 권익보호 익명조사·신고체계 구축(6월), 외국인 인권리더 지정(7월) 및 지원센터 확대(7월, 9→19개), 인권지킴이 및 쉼터 신설('27.1월) 등 추진
 - 통합관리 통합정책 수립 기반 마련(수급설계 체계화, 취업현황 DB 구축 등), 도입 투명성 제고 및 숙련형성·장기체류 확대, 고용허가제 개선 등('26.下)
- (장애인 일할기회 확대) 의무고용률 확대*, 부담금 개편 등 실효성 강화, 금융권·학교법인 집중지원, 대기업 주도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('27년)
 - * 의무고용률(%): (민간) (現) 3.1 → ('27) 3.3 → ('29) 3.5, (공공) (現) 3.8 → ('29) 4.0

□ 이행계획

구분	'26년		'27년	
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사회안전 매트 강화	·가칭 K-노동복지회의소 출범 준비 T/F 설치(9월) 및 연내 방안마련(12월) · 일하는사람기본법, 근로자추정제 패키지 입법(12월)		· 노무제공자 지원사업 시행	· 패키지 입법 관련 하위법령 입법 ·가칭 K-노동복지회의소 운동을 위한 근거 법률 정비(6월) · 사각지대·저소득층 일·육아지원 확대(6월)
격차해소 선순환	·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마련(9월)	· 연차휴가 매뉴얼 배포(12월) ·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	· 실근로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원(연중)	
		·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로드맵 마련(12월)	· 로드맵 추진(계속)	· 로드맵 추진(계속)
	· 기금형 활성화 제도 설계(~7월) · 의무화 단계 및 지원방안 마련(8월) 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(~12월)			
	· 근로기준법 확대 위한 사회적대화(9월~)	· 로드맵 마련 추진	· 온오프라인 속의	
	· 도급 가이드라인 마련 · 공무직원위원회 출범	· 경영평가 지표 확정 (12월)	· 공공부문 적정임금, 공정수당 지급(1월~)	
외국인	· 익명조사·창구 운영, 인권리더 선발(7월) ·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(9→19개, 7월)	· 「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」 마련('26.下) · 「외국인고용법」 국회 통과(12월)	· 인권지킴이, 쉼터 신설(1월) · 권익침해 사전 모니터링(상시)	· 「외국인고용법」 하위법령 개정(6월)
장애인	· 학교 등 장애인 고용 저조 업종 릴레이 간담회(계속)	·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편안 마련 및 추진 (~12월)	·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추진(계속) ·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법 개정 추진(계속)	

□ 장애요인 및 대응

- 5인 미만 기준법 확대,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등은 노·사 입장차, 현장 파급
효과 큼 → ‘을들의 경쟁’이 아닌 ‘영세사업주-노동자 상생’을 위한 논의로 확장
 - * 관계부처 및 노·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, 일반 국민 공론화 등을 통해 영세
사업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방안 논의

< 2 > AX 등 산업전환 대응

□ 주요내용

- (기본계획) AX·GX로 대표되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 「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」 수립(7.9 근거: 「산업전환고용안정법」)
 - 산업전환 시대에 노사정이 함께해야 할 기본원칙* 제시, 7대 과제별 '27년 예산 반영** 등 통해 후속 계획을 신속히 추진
 - * ① 현장 상시 모니터링, ② 일자리 기회 확대, ③ 인간과 기술의 공존, ④ 노동의 가치 존중, ⑤ 성과의 공정한 분배 및 미래 투자, ⑥ 역량 향상·안전망 권리, ⑦ 신뢰 기반 사회적 대화
 - ** 예: 산업일자리전환지원(노출지수 개발,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 확대), K-뉴딜아카데미 등
- (모두의 AI) AI가 누구에게나 일자리 기회가 되도록 기본직업훈련 지원, 노동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
 - 기본직업훈련 누구나 역량 향상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보장(내일배움카드 개편 추진*, '27.1월~), 청년·노무제공자기업 AI 훈련 확대·인프라** 확충('26.下~)
 - * 온라인 및 야간·주말 훈련과정 활성화, 청년·취약계층 등 지원강화 검토 등
 - ** 피지컬 AI 테스트베드(폴리텍) 지역 중소기업 개방(12월), 온라인 콘텐츠 개발(~7월) 등
 - 가이드 노동분야 AI 활용 실태·부작용 및 쟁점별 규범을 조사하고,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가이드 제시(12월)
- (새로운 사회계약) AI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, K-자 성장 극복을 위한 “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” 추진
 - 노·사·전문가 토론회(7월), 전문가 그룹 집중 논의 통한 질문 중심 독서(8월~),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('26.下) 등을 통해 새로운 규범 마련*
 - * AI 산업전환시대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, 미래세대 일자리, 직업훈련·인재양성, 사회안전망 확대 등

□ 이행계획

구분	'26년		'27년	
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기본 계획	·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(7월)		· AI 노출지수 개발 추진(2월)	
모두의 AI	· STEP AI 온라인 학습 콘텐츠 공개(7월)	· 피지컬 AI 테스트 베드 구축·개방(12월)	· '27년 KDT AI 캠퍼스 및 기업 AI 훈련, 노무제공자 직업훈련 운영(1월~)	
	· KDT AI캠퍼스 훈련 과정 운영(7월~)	· AI윤리 가이드라인 마련(12월)		
새로운 사회계약	· 토론회(7월)	· 독서 발간(~11월)	· 사회적 대화(계속)	
	· 독서 논의(8월~)	· 사회적 대화(11월~)		

2 개혁 과제

① 기간제 제도 합리화(국정 93-3)

- **(추진배경)** 제도적 제약 등으로 기간제 노동자 고용불안, 차별처우 등 계속
- **(주요내용)**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
* 주요 예시: 쪼개기 계약 개선,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, 사용기간 조정 등

② 중소규모·플랫폼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강화(대통령 지시사항)

- **(추진배경)** 임금노동자 내 격차 심화, 플랫폼 등 새로운 취약노동자 증가 → 취약노동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격차 완화의 시작점
- **(주요내용)** 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조 및 쉰 국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 통해 노동존중 가치 확산 → 노동조합 활성화

②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대상별* 이해결집 지원 강화(법률근거·예산마련 12월)

- * ▲중소기업 노동자: 근로자대표제 제도화, 노사협의회 확대, 지역 중소산단 공동 노사협의 등
- ▲플랫폼·프리랜서: 일하는사람기본법+근로자추정제 입법, 노조설립신고 운영 개선
- ▲돌봄 등 취약분야 노동자: 노사정 협의 틀 마련

③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(국정 96-4)

- **(추진배경)**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 고려, 청년 경력재설계 지원을 위해 청년부터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
- **(주요내용)**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(법률개정 추진, 12월)

□ 이행계획

구분	'26년	
	3분기	4분기
기간제	· 실태조사, 포럼 등 토대 기초자료 마련(7월)	· 사회적대화(8월~)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(12월)
이해대변	· 주요 법안 통과 지원 및 '27년 예산반영(12월)	
구직급여	· 세부방안 관련 노·사 협의('26.4월~) · 「고용보험법」 개정안 발의	· 「고용보험법」 국회 통과 지원 → (개정 후) 전산망 구축, 하위법령안 마련, 집중 홍보 등

3 지방주도 성장 과제

① 지방 주도 일자리 지원 확대(국정 75-2, 93-1, 94-2, 96-2, 96-4)

□ **(추진배경)**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권익 보호, 재해예방 지원 등 통해 지역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 → 균형성장 기반 확충

□ 주요내용

○ (지역 일자리) 지역고용활성화법* 조기 입법,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 고도화 (초광역 3개, 기초연계 10개 모델 지원 중), 지역·산업 특화 고용센터** 확대(7→10개소)

* 지역주도 일자리정책 지원, 지역 거버넌스 개편, 일자리 정책 역량 강화 위한 인프라 조성 등

** 예: (인천) 바이오, (수원) 반도체, (부산) 해양 등 지역 주력산업 특화

- 사회적기업 예산 복원('25년 284억 → '26년 1,180억)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및 성장지원 강화*

* ('26년) 지역 협업모델 지원 사회성과 비례 인센티브(420개소), 사회적기업 청년 일경험 신설(500명), ('27년) 모태펀드, 민간투자 연계 등 신설 검토, 중기부 등과 이어달리기식 지원 강화

○ (노동권익 보호) 지방정부의 감독업무 수행 여건 마련(법령·인력·교육원 신설 등) 및 협업 강화(전국지역협의회, 합동점검 등), 지역별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지원*

* 예: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, 돌봄노동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,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등

○ (재해예방) 지역 재해유형 고려해 지방정부가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특화 사업 지원*('26년 143억) 및 협업 통한 지원 확대, 지방정부·노사 함께 안전문화 확산

* 예: (경기) 이주노동자 지붕공사, (울산) 조선·자동차 협력업체, (제주) 어선 및 감굴 선과장 등

○ (원·하청 상생) 지방정부 주도의 원하청 격차완화 모델 설계 및 원하청·중앙 정부 협력 기반 지역상생 거버넌스 구축·이행(상생협약* 체결 및 협의회 운영)

* 예: (인천-석유화학) 협력사 안전관리 컨설팅, 휴게공간 보수 등 안전일터 조성

□ 이행계획

구분	'26년		'27년	
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지역 일자리		·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(12월)	· 27년 지역일자리 모델 심사·선정(3월), 특화고용센터 확대(7개소→10개소)	·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강화(연중)
노동권익 보호	· 노동감독관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(7월~) 및 집무규정 마련(8월)	· 노동감독관법 시행 및 선도 지자체 감독 착수(12월, OJT병행)	·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	· '27년 「지역기초노동 질서점검」 착수 (중앙·지방 합동점검 등)
재해 예방	· 지방정부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 추진 (연중, 11개)	· 지방정부 특화사업 내실화를 위한 중앙·지방 정부 합동 현장점검	· 지방정부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 추진 (연중)	· 지역별 안전문화 확산 실천활동 추진(연중)
원하청 상생	· 26년 신규선정 모델 지역·중앙·원하청 간 상생협약 체결(7월~)	· 26년 격차 완화 지원 사업성과 평가(12월)	· 27년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모델 심사·선정(2월)	·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모델 성과 공유(6월)

4 국가정상화 과제

① 허위 구인광고 근절 <7대 사회악>

□ (주요내용) 「직업안정법」 개정 및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

- * (직업안정법)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 부과, 거짓 광고 조치근거 신설 (통합모니터링) 모니터링단 운영(채용플랫폼+주요포털+SNS), AI 단속시스템 구축 등 (관계부처 협업) 경찰청과 거짓 구인광고 피해신고 자료 모니터링 및 조치 등

□ (이행계획) ^{26.3분기} 피해사례 검색 시스템 구축(7월), ^{26.4분기}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(12월), ^{27.1분기} 단속 AI 점검시스템 운영(1월~)

② 제대로 된 근로계약 체결(국정 95-1)

□ (주요내용)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·지원 및 감독

- * ▲(제도개선·지원)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 위한 법 개정, 법 개정 前 지도지침 마련, 컨설팅 및 민간HR 플랫폼 통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지원
▲(감독)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다발의심 지역 릴레이 수시감독, 가짜 3.3 기획감독

□ (이행계획) 조속한 입법 지원과 함께 구조적 원인해소 위한 지원·감독 지속

- ^{26.3분기} 근로기준법 개정(포괄임금) 지원, 기획감독(9월), ^{26.4분기} 릴레이 감독(연중), 가짜 3.3 감독, ^{27.1분기}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원(연중), 기획감독(2월)

③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방지

□ (주요내용)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조사 주체가 되는 불합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토록 조치

- * 사업장 자체 조사 과정에서 괴롭힘 행위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의 객관성도 제고

□ (이행완료) 지침·매뉴얼 시행 및 현장 지도(6월), 안내자료 배포(7월), 추가 개선사항은 사회적 대화(26.下)를 토대로 입법 방안 등 논의 지원

④ 숨어있는 임금체불 발굴, 신속한 권리구제

□ (주요내용) 전수조사에 따른 감독으로 체불 확인시 신고 없이 담당 감독관이 대지급금 신청 의사 확인하여 체불확인서 발급가능하도록 조치

- * 前) 신고(진정) 외 감독으로 인지한 체불에 대해서는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만 발급 → 後)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의 체불액 내 누구든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

-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확대

□ (이행계획)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및 시행(6.18, 이행완료), ^{26.4분기} 포상금 지급 상한액 인상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(10월)

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의 엇박자 해소

- **(주요내용)**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휴직 전·후 인수인계기간까지도 기간제, 파견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추진

법	기존	변경
파견법	파견대상업무와 무관하게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인수인계기간 미포함	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 가능
기간제법	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'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'에 인수인계기간은 포함 안됨	인수인계기간까지 포함 가능

- **(이행안료)** 행정해석 변경 시행(7.1) → 육아휴직 활용 사업장 등 안내·홍보(7월)

⑥ 산업재해 예방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(국정 75-2)

- **(주요내용)** 안전공단 '부정수급예방단' 신설('26.1월, 9명 전담), 부정수급 환수 규정 구체화(시행령 개정) '재정지원 사후관리 AI 시스템' 구축·운영

* 최근 3년간 재정지원 투자완료 사진(1.6만건) 분석 결과를 토대로, 신규 지원설비의 현장 사진을 통해 설치 단계에서부터 적정 설치·운영 여부 확인

- **(이행계획)** ^{26.3분기} 부정수급예방단 운영(연중), ^{26.4분기} 사후관리 AI 시스템 구축·시범운영(10월), 자진신고·익명제보 기간(11월)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(12월)

⑦ 국민과 민간경력자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(국정 75-2)

- **(주요내용)** '안전일터 신고센터' 운영('25.8월) 및 포상금 도입(1인당 신고 횟수 미제한), 재래형 사고 예방 및 신고 활성화 등 위한 대국민 홍보* 강화

* 쇼츠, 유튜브, 카드뉴스, 지하철역 캠페인 등("떨어지면 죽습니다" & "신고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")

-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·위촉(1천명)해 작은 사업장 기술지원(6월말, 12만회)

- **(이행계획)** ^{26.3분기} 신고포상금 하위법령 개정(법률개정 후), 안전한 일터 지킴이 기술지원, ^{26.4분기} 신고포상금 시행,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성과분석

⑧ 산재보상, 신청은 쉽게 보상은 빠르게(국정 75-4)

- **(주요내용)** 「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방안」 발표('25.9.1) → 추정 적용 질병 구체화·법제화, 근골격계 질병별 추정 대상 직종 등 단계적 확대

- 국선대리인 도입하여 산재 신청부터 심사·재심사까지 무료 서비스 지원 추진

- **(이행계획)** ^{26.3분기}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(특별진찰기관 확대, 7.1 시행 완료), ^{26.4분기} 산재보험법(추정 적용 법제화) 개정, ^{27.상반기} 국선대리인 시행